

제280회 강서구의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4차 회의
【2021. 6.15.(화) 10:00】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도시·교통위원회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1년 6월 15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1 - 53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1년 5월 27일
- 라. 회부일자: 2021년 6월 2일

2. 제안이유

2019년 11월 5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공항동 60-28번지 일대,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대 상 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60-28번지 일대
- 면 적 : 149,976m²
- 사업기간 : 2020년~2025년(6년간)
- 추진방향 :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김포공항 관문상권 활성화 등

○ 사업내용

- 주거정비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기반 마련
- 관문상권 특성과 미래수요에 대응한 생활가로 환경개선 및 상권활력 회복
- 친환경 골목길, 주택정비와 마을관리 인프라 조성으로 정주환경 개선

○ 소요예산 : 20,000백만원(국비 80억, 시비 108억, 구비 12억)

나. 사업 세부내용

1) 주거재생 기반 마련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

○ 온세대 생활편의시설 조성

- 청년, 장년층 일자리 및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공항동 생활 문화센터 조성 (신축예정, 공항동 652-7번지)
- 아동, 노년층 돌봄을 지원하는 공항동 공간복지센터 조성 (신축예정, 공항동 53-2번지)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후보군 검토 및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통해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항동 주거정비지원센터 운영(임대운영, 공항동 653-1번지)

○ 생활기반시설 확충

- 동네숲 에너지 놀이터 및 에코경로당 조성 (공항동 장미공원)
- 주민센터 공영주차장 및 커뮤니티 마당 조성 (공항동 주민센터)

2) 김포공항 관문상권 마을경제 활성화

○ 경제활주로 보행활성화 사업

- 군부대이적지개발 및 방화대로 등 주변교통사향 변화를 고려한 주민참여형 교통체계개편 타당성 검토용역 시행
- 상권 특성을 고려한 가로통합설계 용역 시행 및 보도확폭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친화거리 조성

○ 김포공항 관문상권 특성가로 조성

- 공항동 상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용역 시행, 상가 전면, 전면부 쉼터 등 특색있는 상가 경관개선사업 시행
- 노후상가 대상으로 상가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

3)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

○ 친환경골목길 주택정비지원

- 벽면녹화, 친환경 도로포장 등 친환경 골목녹화 가로통합설계를 통한 그린웨이 조성사업 시행
- 그린웨이 인접한 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 친환경 고효율 기자재를 사용하는 친환경 주택정비 지원사업 시행

○ 마을관리 인프라 조성

- 마을관리 앱 개발 및 IoT 주차공유센서 설치를 통한 공유주차장 이용, 생활편의서비스 제공, 커뮤니티 공간 이용 서비스 제공 등 마을생활서비스 기반 조성
- 자원순환 회수로봇 설치, 자원순환수거함 설치 등을 통한 자원순환마을 조성

4. 관련법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5. 검토의견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공항동 60-28번지 일대,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

나. 지방의회 의견청취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주요 내용

-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으로 선정된 공항동 60-28번지 일대 약 149,976㎡ 범위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 및 김포공항 관문상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주거재생 기반 마련 및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공항동 생활문화센터 건립 등 전세대를 아우르는 생활편의시설 조성
과 동네숲 에너지 놀이터 및 에코경로당 건립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 김포공항 관문상권 마을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 특성을 고려한 가로통합설계 용역 시행 등 경제활주로 보행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공항동 상가 경관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시행 등 김포공항 관문상권 특성가로를 조성할 예정이며,
- 생활밀착형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 골목녹화 가로통합설계를 통한 그린웨이¹⁾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마을관리 앱 개발, 자원순환수거함 설치 등 마을관리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임

1) 그린웨이: 도로, 도시, 하천 따위로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보행자나 야생 동물의 이동 통로로 사용하는 친환경적인 길

라. 추진과정

추진경위

- '19. 11. 05. :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일반근린형)
- '20. 06. 22. : 활성화계획 수립 및 공동체활성화 지원 용역 착수
- '20. 07. ~ '21. 02. : 제1차 민관자문협의회 (총 4회)
- '20. 07. : 온라인 주민설명회 및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주도 설문조사 진행
- '20. 09. ~ '21. 01. : 공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전문가 자문회의 (총 5회)
- '20. 10. ~ 12. : 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워크숍 (4회)
- 2021. 01. 28. : 주민협의체 대표 선출 (온라인)
- 2021. 02. : 제1차/ 제2차 행정협의회 개최(총 2회)
- 2021. 03. 03. : 제1차 전문가 자문회의 및 모니터링
- 2021. 04. 15. : 제2차 전문가 자문회의 및 모니터링
- 2021. 05. 03.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서울시 광역공모 신청
- 2021. 05. 27. : 서울특별시 제3차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2021. 06. 01. : 공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실사
- 2021. 06. 04. : 공향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향후계획

- '21. 6. 18. : 공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평가 완료 (서울시)
- '21. 6. ~ 8. : 실현타당성 평가 (국토부, LH)
- '21. 9.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선정결과 발표 (국토부)
- '21. 12.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및 고시
- '22. 1. ~ 25. 12. : 공향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

마. 종합의견

- 김포공항과 인접한 공항동 60-28번지 일대는 고도제한 등의 영향으로 20년 이상된 노후된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기능 침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 2019년 11월 5일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일반근린형)으로 신청하여 선정됨에 따라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확장 시행함으로써,
- 공항동 일대에 대해 지속가능한 주거재생 기반을 마련하고, 상권 회복 및 마을관리 인프라 조성을 통한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등 새로운 도시재생 공간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은 주민참여가 밑바탕 되어야 하므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으며,
- 이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 수립과 실행 시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1

관련 자료

□ 공항동 도시재생활성화 대상지 개요

대상지 개요

4

위 치 강서구 공항동 60-28번지 일대
 면 적 약 149,976㎡
 인 구 4,773명 (집계구 기준)
 가 구 수 2,387가구 (집계구 기준)
 용도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95%
 주요시설 지하철 5,9호선/ 김포공항,
 국립항공박물관, 군부대이적지

구 분	내 용
유 형	일반근린형
계획기간	2020년6월~2022년6월
사업기간	2022년~2025년
사업비	200억원 (국비:지방비=4:6) (국비 80억원, 시비 108억원, 구비 12억원)



쇠퇴현황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인구 쇠퇴지수 증속 과거 30년 21.9% 인구감소	노후도 쇠퇴지수 증속 20년 이상 건축물 66.4%	2종일반 95% 장미공원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전에, 제2항의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경과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확정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장과의 협의, 지방위원회 심의,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 및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국가가 지원할 대상 사업 및 재원의 규모와 지원방식 등의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⑦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업을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의 재정상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에 따른 결정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⑧ 제4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국가지원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⑩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